

論 壇



韓國保險公社의 任務와 業務概要

鄭 龍 善

<韓國保險公社・理事>

1. 序 言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韓國保險公社는 1977年 12月 31日 改正保險業法이 法律 第3043號로 公布된에 따라 設立되어 1978年 3月 2日부터 業務를 開始하였다.

우리나라의 保險產業이 本格的인 軌道에 들어간 것은 1962年 保險業法이 制定, 公布된 以後부터 라고 하겠다. 그 以後 우리나라의 保險產業은 어려운 與件下에서도 꾸준한 成長을 거듭하여 이제는 아세아 第2位, 世界 第25位の 保險大國으로 成長하게 되었다.

그나 이와 같은 驚異的인 成長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制度和 運營 面에서는 改善, 補完되어야 할 點이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量的 成長에 副應하여 保險加入者 保護機能의 補完, 保險產業의 國際競爭力強化 등과 같은 質的인 面에서의 補強이 切實하게 되었으며 特히 高度經濟成長에 힘입은 國民所得의 增加와 經濟의 安定에 따른 國民의

未來指向의 意識構造의 形成 등에 基因하여 앞으로 急增하게 될 새로운 保險需要를 效果的으로 뒷받침할 制度的 整備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또한 國民經濟의 開放趨勢와 金融의 國際化와 같은 周邊與件의 變化에 따라 우리 保險產業도 國際競爭力의 補強이 時急히 要望되었으며, 이에 政府에서는 1976년부터 「保險產業의 近代化」란 旗幟를 내걸고 우리 保險產業이 안고 있는 諸般 問題點을 補完하여 80年代의 高度產業社會를 向한 經濟, 社會 與件의 變化에 알맞은 受容態勢를 갖추도록 強力한 그 改善策을 推進하여 왔다.

昨年부터 始作된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內資動員의 極大化와 社會開發機能의 擴充을 그 基調로 삼고 있는바, 國民所得水準의 向上과 經濟社會의 安定趨勢에 따라 社會保障機能의 擴充과 金融의 機能을 同時에 갖고 있는 保險의 特性으로 因하여 保險產業은 다른 어느 分野보다도 國民經濟上 그 重要性이 漸高하고 있다고 하겠다.

韓國保險公社는 이와 같은 諸般與件을 그 背

景으로 하여 設立되었는바, 그 經緯를 보던,

78年 1月 5日 韓國保險公社 設立委員會의 構成에 이어, 78年 2月 6日 財務部長官의 定款 承認을 얻은後, 78年 2月 27日 特殊法人 第233號로 登記함으로써 無資本特殊法人으로 設立되어, 78年 3月 2日 그 業務를 開始하게 된 것이다.

2. 韓國保險公社의 任務

韓國保險公社의 設立目的은 保險業法 第160條에서 「이 법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業을 指導·育成하고, 特定한 原保險 및 再保險事業을 營爲하게 하기 위하여 韓國保險公社를 設立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當公社의 設立目的과 그 任務는,

첫째, 保險事業의 指導, 育成과

둘째, 特定한 保險事業의 營爲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公社의 業務에 관하여는 法 第179條에서 具體적으로 다음과 같이 列擧하고 있다.

(1) 保險事業者 其他 이 법에 의하여 公社의 檢査를 받아야 할 者에 대한 檢査

(2) 基礎書類의 審議

(3) 保險募集人의 登錄과 管理

(4)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原保險事業의 營爲

(5)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의한 再保險의 引受

(6) 政府가 營爲하는 保險의 再保險 또는 法律에 의하여 運營되는 共濟事業의 再共濟業務

(7) 政府代行業務과 政府로부터 委任받은 業務

(8) 第1號 내지 第7號 이외에 이 법에 의하여 賦與된 業務

그 以外에 法 第180條 내지 第184條에서 保險

에 관한 調查, 統計業務와 保險料率審議委員會, 保險紛爭審議委員會의 設置, 保險研修院의 設置, 運營 및 國際協力 業務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가. 保險事業의 指導·監督에 관한 機能

公社의 保險事業에 관한 指導, 監督機能은 公社의 設立目的에서도 明白히 規定되어 있거니와 이것이 바로 公社의 業務中 가장 核心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機能은 다시 檢査에 관한 機能, 基礎書類의 事前審議機能, 保險紛爭의 審議·調停 및 保險募集人의 登錄과 管理에 관한 機能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1) 檢査에 관한 機能

公社의 檢査에 관한 機能은 保險事業者에 관한 것과 保險代理店, 保險仲介人, 保險計理人, 損害査定人 및 保險協會 등 其他 保險關係團體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가) 保險事業者에 관한 檢査

保險事業者는 法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와 財産狀況에 관하여 公社의 檢査를 받아야」한다. 이 檢査權은 保險事業者의 業務와 財産狀況에 관한 全般的인 事項이 모두 그 對象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바, 保險契約의 募集에서부터 保險金支給에 이르는 保險業務와 資産運營에 관한 一切의 것이 모두 檢査의 對象이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公社는 檢査結果 그 措置에 대한 意見書를 添附하여 財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法 第14條 第4項) 다만 財務部長官은 公社가 檢査를 實施한 結果 「保險事業者가 法令 또는 保險業法에 의한 命命이나 處分에 違反하거나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事實을 發見한 때」에는 公社의 社長으로 하여금 그

事由에 따라 當該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理事, 監事 또는 代表者의 解任 其他 必要한 措置를 要求하게 할 수 있으며(法 第20條 第2項) 또한 法 第209條의 規定에 의하면 그 權限의 一部를 公社의 社長에게 委任할 수 있으므로 委任된 範圍 內에서는 公社의 社長은 檢査 結果에 對한 措置權도 가지게 되어 있다. 그 以外에도 公社는 法 第18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의 業務와 財産狀況에 關한 報告를 하게 할 수 있으며 必要한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나) 保險代理店 등에 關한 檢査

公社는 法 第151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代理店과 保險仲介人에 대하여 또 第199條에 의하여 保險協會,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其他 保險關係團體, 第207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者에게 雇傭되지 아니한 保險計理人 및 損害査定人에 대하여도 保險事業者에 對한 경우와 同一하게 檢査를 할 權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基礎書類의 審議機能

保險事業者가 定款을 除外한 基礎書類의 變更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公社에 設置된 保險料率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法 第7條 第2項). 그리고 法 第181條에서는 保險料率審議委員會의 設置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으며 同法施行令 第41條에서는 이 委員會의 構成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는바 委員長, 副委員長 各 1人을 包含하여 11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公社의 副社長中에서, 副委員長은 公社의 理事中에서 各各 公社의 社長이 指名하는 者가 되고 其他의 委員은 學界, 法曹界, 및 保險業界의 學識, 經驗이 豊富한 者와 保險計理人 및 保險契約者 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으로 公社의 社長이 委囑하는 者

가 되도록 規定하고 있다.

(3) 保險紛爭의 審議·調停 機能

法 第182條에서는 「公社는 保險事業者와 保險契約者, 被保險者 其他 利害關係人과의 사이에 發生한 保險契約에 關한 紛爭의 調停을 위하여 保險紛爭調停機關을 設置, 運營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同法施行令 第44條에는 保險紛爭調停機關으로서 公社에 保險紛爭審議委員會를 두도록 規定하고 있는 바, 이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委員 11人 以內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公社의 副社長 中에서 公社의 社長이 指名하는 者가 되고 委員은 公社의 理事 中에서 社長이 指名하는 者 1人, 學界, 法曹界 및 保險業界의 學識, 經驗이 豊富한 者와 損害査定人, 保險契約者 및 醫師 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으로 公社의 社長이 委囑하는 者가 되도록 規定하고 있다. 勿論 이 委員會의 性格이 訴訟節次와는 關係가 없는 任意選擇의 紛爭調停機關이기는 하나 裁判 以前에 第3者的 立場에 있는 公社의 委員會에서 簡單한 節次로서 保險紛爭을 公正하게 仲裁, 調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保險契約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信賴받는 保險風土를 造成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고 보겠다.

(4) 保險募集人의 登錄 및 管理 機能

法 第146條는 「保險募集인이 되고자 하는 者는 公社에 登錄하여야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同法施行令 第22條와 同法施行細則 第41條에서는 登錄申請의 節次와 添附書類를 規定하고 있으며 同法施行令 第23條에는 保險募集인이 될 수 있는 者의 登錄要件을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保險募集인은 모두 公社에 登錄을 하게 되고 公社는 그 登錄過程에서 嚴格한 審査를 通하여 不適格者를 찾아내어 保險募集人을 精銳化

하여야 할 것이다.

나. 特定保險事業의 營爲

公社가 營爲하게 될 保險事業의 範圍에 關하여는 法 第179條 第4號 내지 第6號와 同法施行細則 第52條에서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財務部長官은 78年 2月 28日 公社가 營爲할 原保險事業으로,

첫째, 海外 勤勞者에 대한 勤勞者災害補償責任保險

둘째, 광地域의 原保險

셋째, 사우디 地域 進出 韓國企業體에 대한 建設工事保險을 指定하였다.

그리고 公社가 營爲하는 再保險事業에 關하여

첫째, 公社는 海外 就業勤勞者에 대한 規程에 의하여 營爲하는 災害補償保險事業의 保險契約金額 中 100分의 70에 相當하는 金額 以上을 專業再保險事業者에게 再保險에 붙여야 하며,

둘째, 公社의 再保險事業의 範圍는 再保險者가 引受한 年間保險契約의 國內保有(公社 保有分 除外) 超過額에 相當하는 保險料 總額의 100分의 20 以內에서 引受하도록 하고 다만 이 경우 1危險 當 保有限度額은 保險事業基金의 100分의 10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說明한 特定保險事業은 國內保有能力을 增大함으로써 海外收支逆調를 改善하고 一般 民營 保險事業者가 營爲하기 어려운 特殊한 社會政策保險을 國家的 次元에서 營爲하게 하여야겠다는 政策的 配慮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其他 業務 協助 機能

公社는 上述한 機能 以外에도 保險에 關한 調査 統計와 資料蒐集(法 第180條), 保險從事人의 資質向上을 위한 保險研修院의 運營(法第183條) 및 保險에 關한 國際機構와의 交涉業務 등의 機

能을 가지고 있다. 卽 公社는 保險에 關한 調査 研究와 統計業務를 行하고 이에 關한 刊行物을 發刊하여 政府의 保險政策의 樹立에 必要한 情報와 資料를 提供하고 保險事業의 發展에 寄與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또한 公社는 保險人의 資質을 向上시키고 保險에 關한 專門的인 知識을 普及하기 위하여 保險研修院을 設置·運營할 수 있으며 財務部長官의 指示를 받아 保險에 關한 國際機構와의 交涉業務를 行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3. 韓國保險公社의 1978年度 業務概要

以上으로 公社의 主要 任務와 機能에 대하여 保險業法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는 바 以下에서는 公社의 1978年度 基本運營指針과 主要業務概要에 關하여 簡單히 論述하기로 한다.

가. 1978年度 基本運營指針

公社가 1978年度 中에 重點의으로 推進하여 나갈 三大 基本運營指針은 다음과 같다.

첫째, 保險募集秩序의 淨化에 注力할 것이다. 保險契約에 있어 募集이란 가장 基本的인 것이고 重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保險募集에 있어서 우리 業界가 안고 있는 問題點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現實의으로 가장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이 스카웃 問題와 不實募集의 問題이다.

다시 말하면 同業者 間에 優秀한 募集人의 確保를 위한 過當競爭이 保險募集秩序를 흐리게 하는 深刻한 問題이다. 勿論 이미 오래 前부터 生保社 間, 損保社 間에 保險募集秩序 改善을 위한 協定이 締結되어 있기는 하나 事實上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實情인 것 같다.

다음으로는 保險內容의 歪曲說明, 融資條件附募集 등과 같은 不正話法에 의한 下實募集行爲, 募集人의 資格이 없는 者에 의한 不法募集行爲 등의 不實募集行爲로 因하여 保險契約者에게 不當한 被害를 주는 경우가 있어 保險에 대한 國民의 認識을 흐리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어 이와 같은 保險募集秩序를 淨化하는 것이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問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둘째, 保險經營의 內實化를 促進할 것이다.

이제 우리 國民의 生活水準은 持續된 高度의 經濟成長에 힘입어 相當한 水準에 到達하였는 바, 「豫測할 수 없는 來日을 위한 對備」인 保險이 一般大衆의 生活化가 될 段階에 이르른 것 같다. 따라서 우리 保險業界는 必야흐로 스스로의 內實을 다져서 國民으로부터 信賴받는 公益企業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公社는 保險產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保險業界를 指導·育成할 責務를 맡고 있는 바, 信賴받는 保險風土의 造成을 위하여 保險經營의 內實化를 促進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일 것이다.

셋째, 保險人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保險人 중에서도 保險募集人의 資質向上의 問題가 現實의으로 가장 深刻한 問題이다. 사실 아직까지도 保險에 대한 一般 國民의 認識이 否定的이고 保險募集人들의 收入이 主로 不定期的인 募集手當에 依存하고 있으며 그 水準도 極히 미미한 狀態에 있어 保險募集人이 專門知識人으로서의 位置에 定立되어 있지 못한 實情이다. 이에 지난번 政府에서는 保險募集人의 資格制度를 導入하여 一定한 研修를 거친 후 協會에서 實施하는 試驗에 合格한 者로 制限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保險募集人에 의한 不實募集行爲가 殘存하고 있어 保險認識의 刷新에 沮害要因

이 되고 있는 바 公社는 이와 같은 募集人의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努力할 것이며 또한 保險計理人이나 損害査定人과 같은 保險專門人의 育成에 힘쓸 것인 바, 이를 위하여 公社의 保險研修院의 研修課程을 強化할 計劃이다.

나. 主要業務 概要

1978年度 公社의 業務에 관하여는 審議制度, 檢査活動, 保險募集秩序淨化, 調查活動, 非營利性 保險事業 및 保險研修活動의 順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公正한 審議制度의 定立

公社에 設置되어 있는 保險料率審議委員會와 保險紛爭審議委員會의 運營을 公正히 遂行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同委員會의 運營上의 基本方向은,

첫째, 保險料率의 審議는 科學的 統計資料에 의하여 審議하되 料率의 自律性을 尊重하고 Dumping Rate를 止揚하며 料率 相互間의 衡平을 維持할 수 있도록 審議함으로써 公正한 審議 基盤을 造成하도록 하고,

둘째, 保險紛爭은 紛爭當事者에게 參與機會를 賦與하여 充分한 意見陳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保險契約者의 權益을 最大限으로 保障할 수 있도록 公正한 立場에서 保險紛爭을 調停할 것이다.

保險料率審議委員會는 78年 3月 23일에 構成되어 그 以後 業務를 遂行하여 왔으며 그 동안 2회에 걸쳐 總 9件을 審議하였는 바, 그중 7件은 可決되고, 1件은 否決, 또 1件은 保留되었다 保險紛爭審議委員會는 78年 3月 24日 構成되어 그 以後 業務를 遂行하여 왔으며 그 동안 2회에 걸쳐 總 4件을 審議하였는 바, 그중 1件은 支給 1件은 棄却, 2件은 保留되었다.

保險料率審議委員會와 保險紛爭審議委員會의 構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保險料率審議委員會

委員長：公社 監督擔當 副社長

委員：業界代表 3名

保險契約者 代表 3名

學界代表 1名

法曹界代表 1名

保險計理人代表 1名

公社 理事 1名(計 10名)

○ 保險紛爭審議委員會

委員長：公社 監督擔當 副社長

委員：業界代表 2名

保險契約者 代表 2名

學界代表 1名

法曹界代表 2名

醫師代表 1名

損害査定人代表 1名

公社 理事 1名(計 10名)

(2) 檢查活動

公社의 가장 重要한 業務 중의 하나는 保險事業者, 保險協會, 保險代理店, 其他 保險關係團體 등에 대한 檢查機能이다.

公社는 檢查業務의 基本方向으로,

첫째, 保險產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한 指導·育成에 力點을 두고,

둘째, 保險業界에 殘存하고 있는 痼疾의 病弊要因을 摘出, 改善함에 注力하며,

셋째, 保險契約者, 被保險者 등의 權益을 最大限으로 保護함에 두고 있다.

公社는 檢查業務의 效率的 遂行을 위하여 檢查業務規程을 作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바 있으며, 이에 의하면 檢查의 方法은 實地檢查를 原則으로 하되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書類 등의 提出을 받아 書面檢查를 할 수 있도록 規程하고 있다.

當公社의 檢查는 基本檢查計劃에 따라 年 1回以上 定期的으로 實施하는 定期檢查와 特定한 事項에 대하여 必要性이 있을 때마다 隨時로 實施하는 隨時檢查가 있는 바, 今年度의 定期檢查는 5月부터 實施될 豫定으로 있다.

(3) 保險募集秩序 淨化運動

保險募集秩序의 淨化는 今年度 當公社가 推進할 三大 重點事項의 하나이다. 이를 위한 基本方向으로는,

첫째, 保險募集人의 職能化를 促進하고,

둘째, 保險代理店을 專業大型代理店으로 段階的으로 指導·育成하며,

셋째, 保險募集形態를 近代的인 方法으로 轉換하도록 함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基本方向에 따라 當公社는 우선 保險募集人의 登錄管理制度를 確立할 것이다.

保險業法의 改正으로 保險募集人의 登錄制度가 財務部로부터 公社로 그 登錄機關이 變更되었으며 또한 募集人의 登錄資格要件도 「保險募集에 관한 研修를 履修하고 協會에서 施行하는 試驗에 合格한 者」나 「保險關係機關에서 1年以上 從事한 者」로 制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公社는 保險募集人의 새로운 登錄證으로의 更新을 늦어도 6月 10日까지는 完了하고 公告를 할 豫定으로 있다. 그리고 登錄更新時나 新規登錄時에 資格要件을 嚴格히 審査하여 二重登錄者나 不適格 募集人을 索出함으로써 保險募集人의 資質을 向上시키고 精銳化시켜 나갈 것이다.

그 다음으로 保險代理店에 관하여는 78年 4月 1日 財務部長官으로부터 “損害保險代理店管理規程”이 示達되었는 바 이 規程에 의하여 損害保險代理店의 許可 및 管理監督權限이 財務部長官

으로부터 公社의 社長에게 委任되었다. 이러한 權限의 委任은 法 第209條에 根據를 둔 것인 바 이에 따라 앞으로는 保險代理店의 許可와 管理 監督은 公社의 社長이 管掌하게 되었다.

(4) 調査活動

保險產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迅速·正確한 調査活動을 展開하여 나갈 것이다.

그 基本方向으로는,

첫째, 國內外 保險市場의 各種 保險關係資料를 調査, 蒐集, 分析하고

둘째, 諸般資料 및 各種 統計를 迅速正確하게 作成하야

셋째, 政府의 保險政策樹立 時에 有用한 資料를 供與하며 또한 各 保險事業者, 協會 등 保險關係機關에서 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두고 있다. 그리고 今年度 調査活動強化方案의 一環으로 保險센서스를 實施하여 保險加入者의 保險認識度를 測定하고 國民의 保險選好性向을 把握함으로써 保險의 大衆化 促進을 위한 資料를 蒐集할 것이다.

今年度에 發刊할 各種 資料로서는 77年度 年次報告書를 78年 4月 24日 出刊하였고 保險調査月報의 創刊號(3月分)를 既히 發行하였으며 앞으로 保險年鑑은 8月 頃, 英文保險業法은 6月 頃, INSURANCE IN KOREA 는 7月 頃, 韓國의 保險產業은 9月 頃에 各各 發行할 豫定으로 있으며 그 以外의 各種 資料는 隨時로 作成, 發表할 것이다.

(5) 非營利性 保險事業活動

公社가 營爲할 非營利性 特定保險事業의 營爲를 위하여 海外關係當局과 去來社에 대한 通報 및 再保險株式會社와의 再保險 協約을 締結하였

다. 參考로 再保險 引受 件當 保有限度를 보면 火災는 60萬\$, 機械는 30萬\$, 航空은 60萬\$이다. 또한 原子力保險의 營爲를 위하여 그 基礎書類를 78年 4月 7日에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었으며 共濟事業에 대한 再共濟의 開發을 위하여 그에 대한 市場調査와 引受에 따른 業務協議를 推進 중에 있다.

(6) 保險研修活動

끝으로 公社의 保險研修院의 研修活動을 強化 實施할 것이다.

當公社는 研修의 基本方向을 保險事業者의 資質向上과 保險專門人 養成에 두고 이를 推進하고 있다. 이에 따라 保險研修院運營規程이 制定되었는 바, 이에 의하면 保險研修院은 運營委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自律的으로 運營하게 되어 있다. 即 運營委員會는 公社의 研修擔當 理事를 委員長으로 하고 公社의 研修院事務局長과 保險學會 代表 2人 및 各 研修對象機關의 任員 各 1人으로 總 2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게 되어 있으며 이 委員會는 基本研修計劃의 樹立, 研修經費豫算 및 決算의 審議 그리고 研修經費 分擔金の 配分 및 徵收에 관한 事項 등을 審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研修에 所要되는 經費에 관하여는 事務室, 講議室의 賃借保證金, 賃借料, 什器, 備品 및 任職員의 給與 등의 固定經費는 公社의 分擔으로 하고 그 以外의 一般 研修에 所要되는 經費는 收益者負擔原則에 따라 研修對象機關에서 分擔, 充當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今年度の 研修計劃은 一般課程 5회에 250名, 專門課程 14회에 640名, 그리고 特別課程 7회에 420名 合計 26회에 總 1,310名을 研修할 計劃으로 있다.

4. 結 言

以上으로 當公社의 設立背景과 任務 그리고 今年度의 業務概要에 대하여 簡略하게 說明하였다.

現今 우리의 經濟社會的 與件은 國民所得의 劃期的 增大에 힘입어 「來日을 向한 餘裕」가 생겨가고 있으며 이에 우리 保險產業은 來日의 不安에 對備하는 公益的 國民企業으로 成長함에 適合하게 諸般與件이 造成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덧붙여 急變하는 經濟社會的, 國內外的 與件에 슬기롭게 對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最近에 있는 一連의 새로운 體制로서의 變革은 保險產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크게 鼓舞的인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保險產業에 從事하고 있는 우리들은 肯定的인 姿勢로서 그리고 보다 創意的이고 進取的인 姿勢로서 이를

받아 들이고 前보다 一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맡은 바 責務를 다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一大 變換期에 處하여 있는 이 時點에서 保險產業의 健全한 指導·育成이란 莫重한 所任을 맡고 있는 韓國保險公社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責任의 무거움을 實感하고 있는 바이다.

公益性, 社會性이란 保險의 特性을 勘案하여 볼 때 保險產業은 保險加入者의 權益을 위해서 努力하는, 한편 大衆에게 歡迎받고, 大衆의 生活 속에서 함께 숨쉬는 國民的 公益企業으로서의 保險產業으로 定着, 成長할 때만이 健全한 發展이 期約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 保險人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姿勢를 가지고 合心하여 努力하고 各者가 맡은 바 責務를 다하여 나갈 때 우리 保險產業의 來日은 밝을 것임을 確信하는 바이다.

海 外 托 庇

女性도 消防員가능

(프랑스서 公式許可)

프랑스정부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소방서원으로 일할수있다고 허가함으로써 프랑스 남성들만의 아성이 또 하나 무너졌다.

프랑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관보를통해 공식발표했는데 「데프랑스와·아비유」라는 가정주부가 소방서원 모집에 응모했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후 투쟁을 벌여온지 2년만에 마침내 승리를 거둔것이다.